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 >

▣ 윤한홍의원안(의안번호 제220263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입법취지 및 필요성 ····· 2

2. 「행정기본법」상 공통 적용사항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5

3. 법률 적용관계의 명확화 ····· 8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한홍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8.

3. 회 부 일 : 2024. 8. 9.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필요성

□ 제정안은 이행강제금 관련 개별 법률을 법제처 주도로 일괄정비하는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비대상 법률 및 정비 내용 >

<table>
<tr><th>구분</th><th>법률명</th><th>조문</th><th>내용</th></tr>
<tr><td>중복규정 삭제</td><td rowspan="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td><td>제407조제2항·제3항 개정, 동조 제5항·제6항 삭제</td><td>행정기본법 중복내용 삭제</td></tr>
<tr><td rowspan="6">법률 적용관계 명확화</td><td>제407조제4항 개정</td><td rowspan="6">개별 법률 규정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확인규정 명시</td></tr>
<tr><td>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td><td>제24조의3 제5항 신설</td></tr>
<tr><td>금융지주회사법</td><td>제69조의2 제5항 신설</td></tr>
<tr><td>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td><td>제39조 제6항 신설</td></tr>
<tr><td>상호저축은행법</td><td>제38조의8 제5항 신설</td></tr>
<tr><td>은행법</td><td>제65조의9 제5항 신설</td></tr>
</table>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인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에 해당함.

□ 「행정기본법」 제30조[1]는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2]는 ① 가중·감경 고려요소, ② 계고, ③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 ④ 반복부과 및 의무이행 시의 조치, ⑤ 국세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된 공통 적용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였음. 한편, 동법 제31조제1항[3]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

1)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이하 생략)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이하 생략)
4. 강제징수: (이하 생략)
5. 즉시강제: (이하 생략)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하 생략)

2)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및 산정기준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음.

<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체계 >

개별 법률 직접 규정사항 (제31조제1항)	이행강제금 관련 공통 적용사항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1. 가중·감경 고려요소 2. 계고 3.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 4. 반복부과 및 의무이행 시의 조치 5. 국세강제징수 등의 예에 따른 징수

□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과 관련하여,「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관련 공통 적용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통일적 운용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2. 「행정기본법」상 공통 적용사항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중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관련 공통 적용사항과 중복되는 ① 계고, 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련 문서통지, ③ 의무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에 관하여는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삭 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은 계고(제407조제2항),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동조 제3항), 반복부과 및 의무이행 시의 조치(동조 제4항·제5항), 징수방법(제434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① 계고, ②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 ③ 의무이행 시의 조치 규정의 경우,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이행강제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 비교 >

구 분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 및 제434조
가중·감경 고려요소	1.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상습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규정내용 없음>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행정상의무를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행정기본법과 유사>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	<행정기본법과 유사>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 함
반복부과 및 의무이행 시 조치	의무 이행시까지 반복 부과 가능	<특별 규정 추가> 1년에 2회 범위에서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의무자가 의무 이행하면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	<행정기본법과 유사>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징수방법	국세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라 징수	<특별 규정 추가>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되, 국세청장에게 업무위탁 및 세무관서장 등에게 과세정보 제공요청 가능

□ 특별히 달리 규정할 사항이 없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개별 법률마다 다른 문구로 규정한다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은 직접 「행정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 간 차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임.

3. 법률 적용관계의 명확화

□ 제정안은 개별 법률 규정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① 가중·감경 고려요소, ② 계고, ③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 ④ 반복부과 및 의무이행 시의 조치, ⑤ 국세강제징수예에 따른 징수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현 행	개 정 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 략) <신 설>	제39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행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함.[5)]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① 가중·감경 고려요소, ② 계고, ③ 금액·사유·시기에 대한 문서통지, ④ 반복부과 및 의무이행 시의 조치사항, ⑤ 국세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률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규정임.

5)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 법률 규정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됨을 명문화함으로써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

참고1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법률명	주식처분명령 부과대상	주식처분명령	주식처분명령 기한 내 미이행시
금융 구조개선법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대상)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 1일당 처분대상 주식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금융 지주회사법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위에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의 전환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에 전환계획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금감원장 검사결과 은행지주회사등과의 불법거래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전환대상자의 주식보유제한 한도 초과 보유 은행지주회사 주식	
	동일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규정 등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한도 초과 보유 주식	
	금융위 승인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보유요건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한도 초과 보유 주식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편입이 관련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새로 편입한 자회사 등의 주식	
	금융위 승인을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에 전환계획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금감원장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간 불법거래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 전환대상자 :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전환대상자의 행위제한규정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주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그 주주·사원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주식을 보유했으나, 기관전용사모집합기구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한도 초과 보유 주식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시 금융위 인가를 받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금융지주회사 인가가 취소된 때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의 지배관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상)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회사가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미승인, 미승인신청 주식	

법률명	주식처분명령 부과대상	주식처분명령	주식처분명령 기한 내 미이행시
	(기존 대주주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기한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법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양수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을 갖춰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기존 대주주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기한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미승인, 미승인신청 주식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미충족 대주주에 대한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해당 대주주 보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은행법	동일인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간) 1년 이내 기간 동안 (대상) 주식보유비율 초과 보유 주식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위에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의 전환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에 전환계획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금감원장 검사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한도 초과 보유 주식	
	금융위 승인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보유요건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한도 초과 보유 주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 그 주주·사원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했으나,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간) 지체없이 (대상) 한도 초과 보유 주식	
자본시장법	거래소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자 (집합투자기구, 외국거래소와 제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금융위에서 승인한 경우, 정부, 그밖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	(기간)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대상) 한도 초과 보유 주식	처분대상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2 관련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로 본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9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는 날(주권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 제65조의10 및 제65조의11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법」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